

의안번호	2213762
의 퇴 인	정태호의원
회 답 일	2025.11.10.
추계번호	25E573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1조의25 (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) 등	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신설: (개정안)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(청년미래적금)에 2028.12.31.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1.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 2.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 3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종,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갖추 것 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,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갖추 것 ②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 가능, 납입한도 연 600만원 이하, 계약기간 3년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25 (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) 등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,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세의 비과세 신설(안 제91조의25 등)
 - 동 상품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)이하인 청년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,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한해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인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등의 상품으로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 가능함

- 이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예상 가입 인원수 및 예상 이자율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1인당 이자·배당소득 및 이자·배당소득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재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
- 1인당 이자소득 추정 = 1인당 월 납입액 × 평균 납입률 × 이자율 × 기간
 - 1인당 이자소득세 추정 = 1인당 이자소득 추정 × 이자소득세율(14%)
 - 비과세 되는 총 이자소득세 추정 = 3년 만기까지 보유 가입자수 × 1인당 이자소득세 추정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